

무배당 간편가입 360
종합보장보험 (갱신형)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간편가입 360 종합보장보험(갱신형)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간편가입 360 종합보장보험(갱신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① 최초계약

가입나이 범위								
유형	보험기간	보험기간 유형	납입기간	납입기간 유형	남자(세)		여자(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0년 갱신형	10	년	10	년	30	80	30	80
20년 갱신형	20	년	20	년	30	80	30	80

② 갱신계약

가입나이 범위								
유형	보험기간	보험기간 유형	납입기간	납입기간 유형	남자(세)		여자(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0년 갱신형	1~5	년	전기납	년	40	[100 - 이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기간]세	40	[100 - 이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기간]세
20년 갱신형	1~5	년	전기납	년	50	[100 - 이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기간]세	50	[100 - 이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기간]세

주1)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은 10년, 20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주2)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5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일부터 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주3) 이 계약의 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한다.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별도의 의무가입 내용이 없습니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하지 않습니다.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나. 보험료를 선납할 때의 할인은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적용하며, 선납할 때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이 계약의 최초계약의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이 아닌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합니다.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은 계약체결시점과 달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 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3. 기타

가. 갱신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10년, 20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5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가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③ 계약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약관 제21조(계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
 - 2.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3. 약관 제23조(계약의 소멸)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 ⑤ 제3항에 따라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다만,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이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⑥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점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해 드립니다.
 - ⑦ 제6항의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⑧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⑨ 계약자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이 계약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⑩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계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⑪ 제5항에 따라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약관이 변경되어 갱신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약관을 준용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중요사항 변경내역, 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알려드립니다.
 - ⑫ 제11항에 따라 회사는 계약자의 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변경 전 계약은 만료됩니다.
 - ⑬ 제11항에 따라 회사가 계약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①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별첨 제2호)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하며, 간소화된 계약전알릴의무 항목 이외의 병력 정보는 계약심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

쳐 가입 가능한 일반심사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간편심사상품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제1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참조)을 받습니다.

- ③ 본 계약의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일반심사 대상인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보험기간 1년 이하인 단기보험 제외)에 청약하고 회사의 심사를 통해 해당 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본 계약의 무효를 원하면 회사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단, 본 계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④ ③의 각 용어는 보험업감독규정의 정의를 따르며, “보장성보험”이란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고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금보험”이란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 ⑤ 간편심사상품의 청약 시,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청약시점 직전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보험기간 1년 이하인 단기보험 제외)을 가입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표준채 여부 재심사를 통해 일반가입형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동일한 담보의 일반가입형 상품이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상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동 보험 및 부가특약의 최대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별로 나이 및 직업별 위험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가입한도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마.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대면채널로 합니다.

바. 헬스케어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 ①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피보험자 등에 제공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혹은 보험 종류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본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가 집니다.
- ③ 본 서비스는 대내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으)로 부터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교부받고,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인/서명)

친권자

(인/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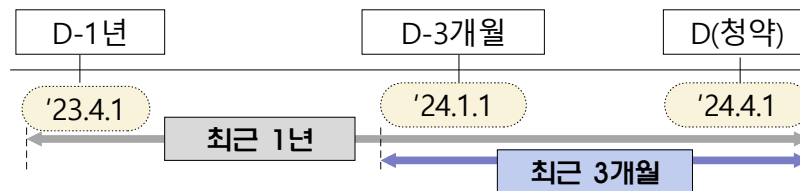
(별첨 제2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6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 이 청약서에서 ‘최근 3개월 이내(2,5년 이내)’는 청약일의 3개월 전일(2,5년 전일)부터 청약일 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별 알릴의무 기간 중 짧은 기간을 알릴의무 기간으로 합니다.

건강 상태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① 입원 필요 소견 ② 수술 필요 소견 ③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④ 질병확정진단 ⑤ 질병의심소견

※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외부 환경 및 기타

4. 직업에 관한 사항은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포함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직업 직장명(근무처/소속부서)

취급업무(구체적으로 하는 일)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를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상품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알릴의무가 없습니다.)

5.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피보험자: , / 배우자: ,)

- ① 승용차(영업용) ② 승용차(자가용) ③ 승합차(영업용) ④ 승합차(자가용) ⑤ 화물차(영업용)
⑥ 화물차(자가용) ⑦ 이륜자동차(50cc미만 포함)(영업용) ⑧ 이륜자동차(50cc미만 포함)(자가용)
⑨ 건설기계 ⑩ 농기계 ⑪ 기타()

6.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용 알릴 의무가 없는 상품입니다.)

7. 월평균소득(계약자 기준) : ()만원

* 보험계약자가 직접 기재하여야 하는 문구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하였으며, 이 보험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질병 등의 건강상태에 대해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